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124호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Gyeonggi Daily Report - 124  
Data as reported by 22 June 2020

<http://www.gidcc.or.kr/gypd-type/covid-19-daily-reports/>





##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124호 주요 내용

---

국외 발생현황

국내 발생현황

국내외 뉴스

국외연구동향

- “업무로 복귀하기”가 마주한 도전과제 II (20.06.18)

참고자료

-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 활용방법

# 국외 발생현황

## □ 전세계 (2020.6.22.10시 기준)

- 전날보다 164,248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8,918,101명(전일 대비 1.9%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66,527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5.2%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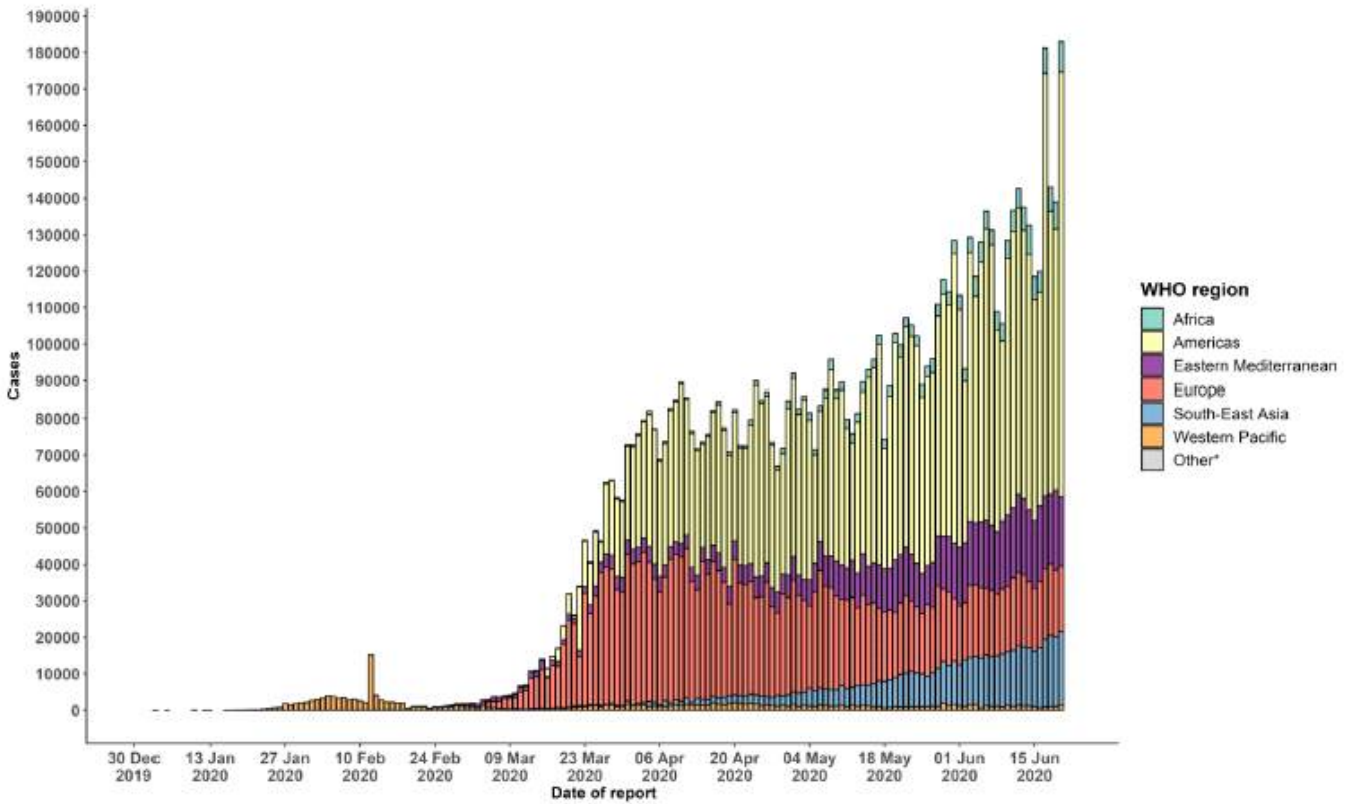


그림 1. 신고일 기준 유행곡선 (2020.6.21. 기준, WHO)

- 지난 24시간 내 신규 보고 및 WHO 위험 평가

	지난 24시간 내 신규 보고			
	확진		사망	
	기존	신규	기존	신규
전세계	8,708,008명	183,020명	461,715명	4,743명
아프리카	216,999명	8,464명	4,874명	124명
아메리카	4,279,854명	116,041명	219,144명	3,241명
동지중해	897,403명	18,975명	20,075명	515명
유럽	2,527,618명	17,922명	193,086명	442명
동남아시아	580,533명	20,248명	17,213명	399명
서태평양	204,860명	1,370명	7,310명	22명

	WHO 위험 평가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국제 수준				

※ WHO Situation Report(6.21.) 참조

# 국내 발생현황

## □ 전국 (2020.6.22.0시 기준)

※국내 발생 현황은 오전 10시에 배포되는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전일 대비 17\*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12,438명(10,881명 격리해제)의 환자 보고

\* 경기 6명, 서울 5명, 충남 2명, 대구·인천·전북·경북 각 1명

표 1. 지역별 코로나(COVID)-19 신규환자 발생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합계
소계	5	0	1	1	0	0	0	0	6	0	0	2	1	0	1	0	0	0	17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169,628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150,225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9,403명이 검사 진행 중임

### [전국]확진자 추이

17명 (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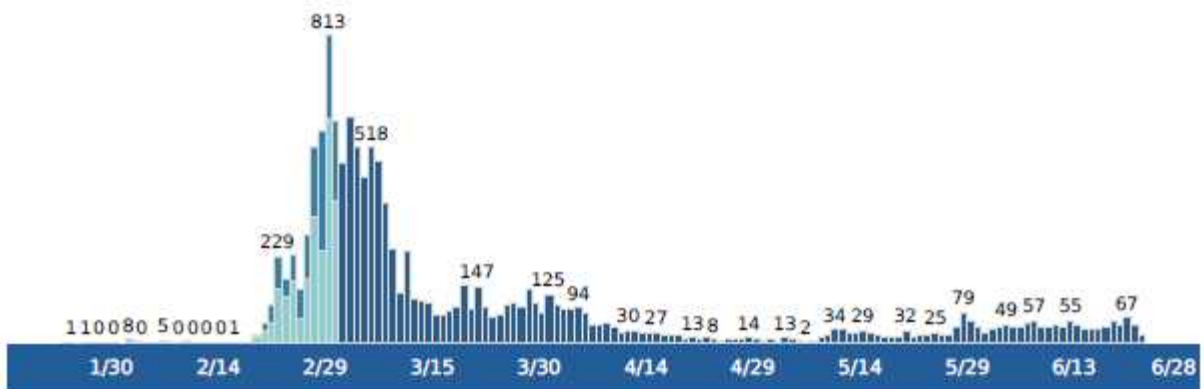


그림 2. 코로나(COVID)-19 전국 확진자 추이(20.6.22.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전국]확진자 누적

12,438명 (0시 기준)



그림 3. 코로나(COVID)-19 전국 확진자 누적(20.6.22.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전국]검사자 추이

5,586명 (0시 기준)



그림 4. 코로나(COVID)-19 전국 검사자 추이(20.6.22.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전국]검사자 누적

1,169,628명 (0시 기준)



그림 5. 코로나(COVID)-19 전국 검사자 누적(20.6.22.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 경기도 확진환자 현황(2020.6.22.10시 기준)

확진환자 현황	
확진환자(격리중)	349
퇴원자(격리해제)	753
사망자	23
계	1,125

확진환자의 경기도민 접촉자 현황	
격리중	3,909
격리해제	27,543
계	31,452

## 확진자 추이

1,12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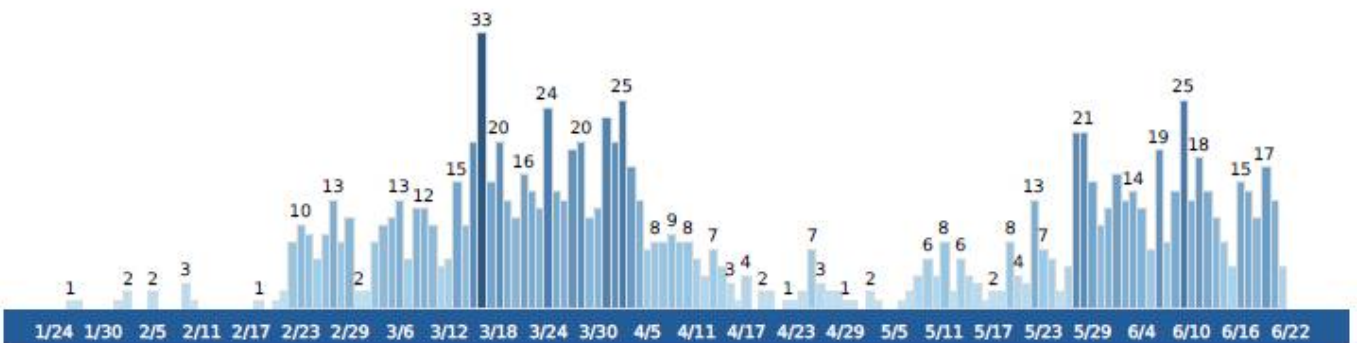


그림 6. 코로나(COVID)-19 경기도 확진자 추이(20.6.22.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성별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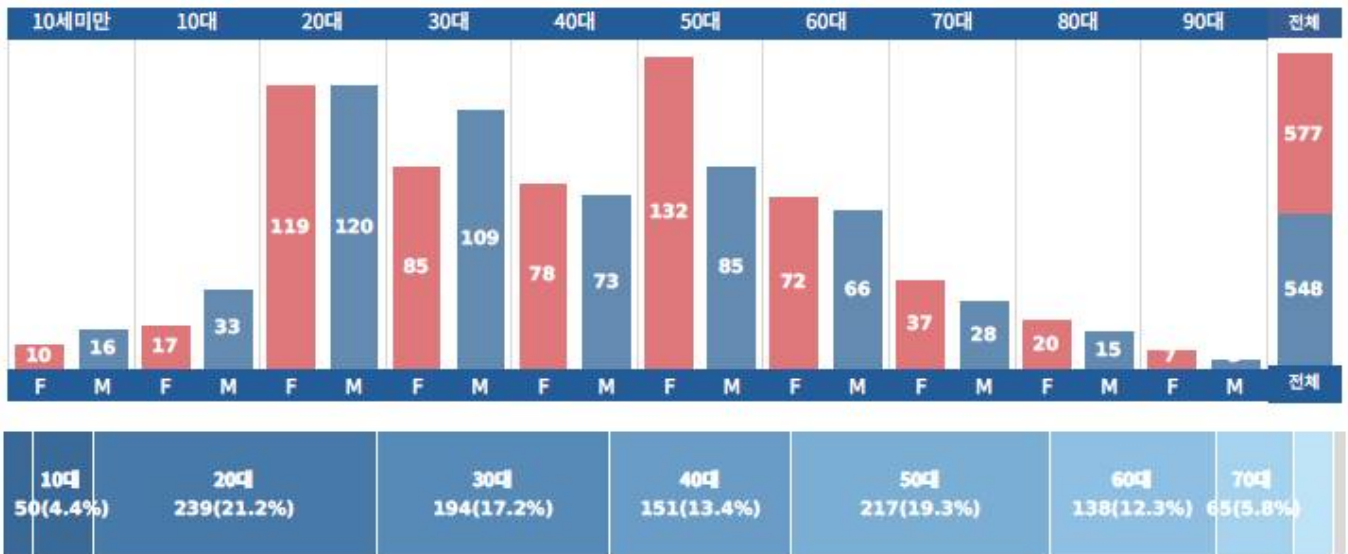


그림 7. 경기도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20.6.22.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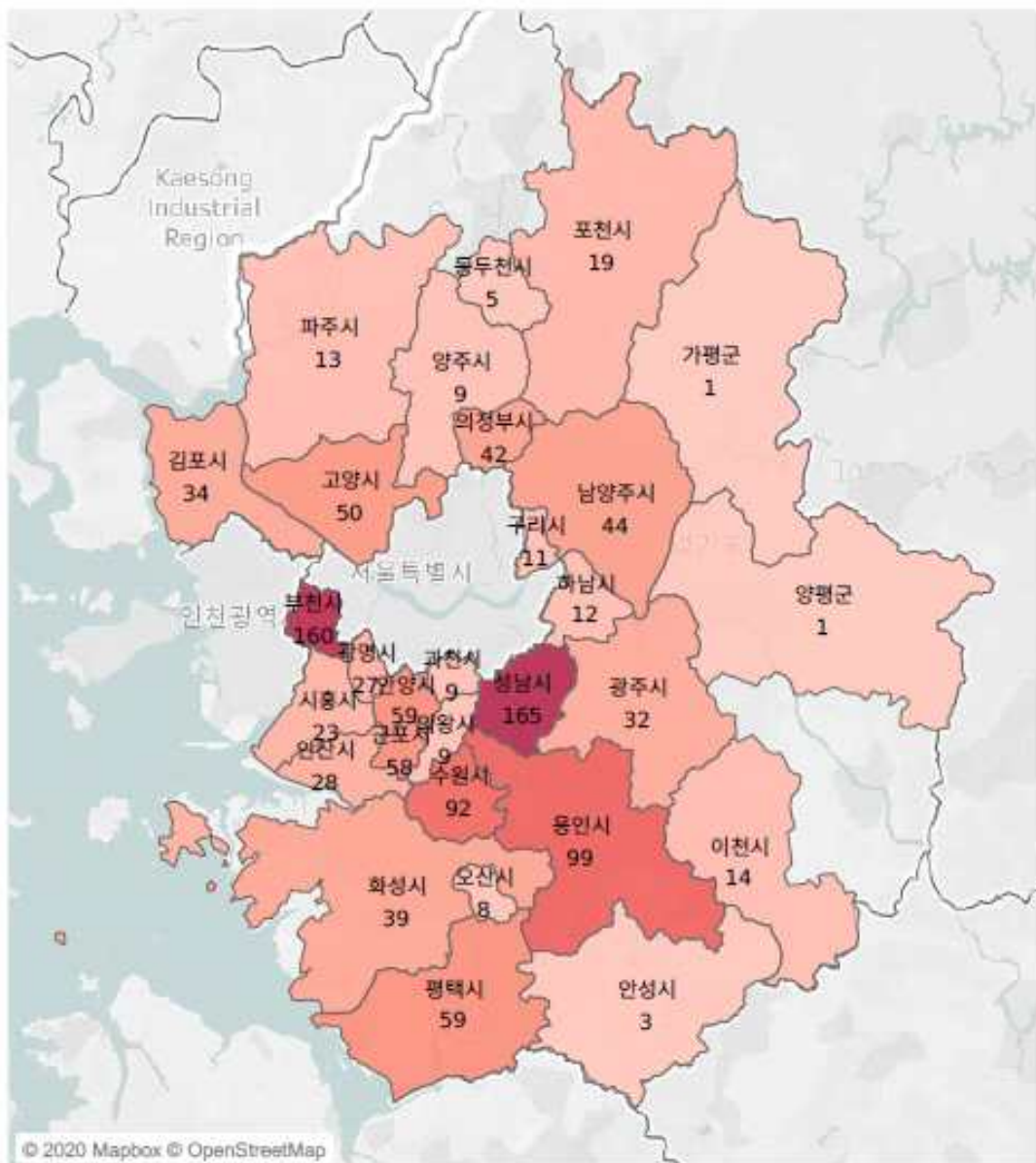


그림 8. 경기도 31개 시군 확진자 현황(20.6.22.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경기도 확진자 증상발현일부터 확진까지 소요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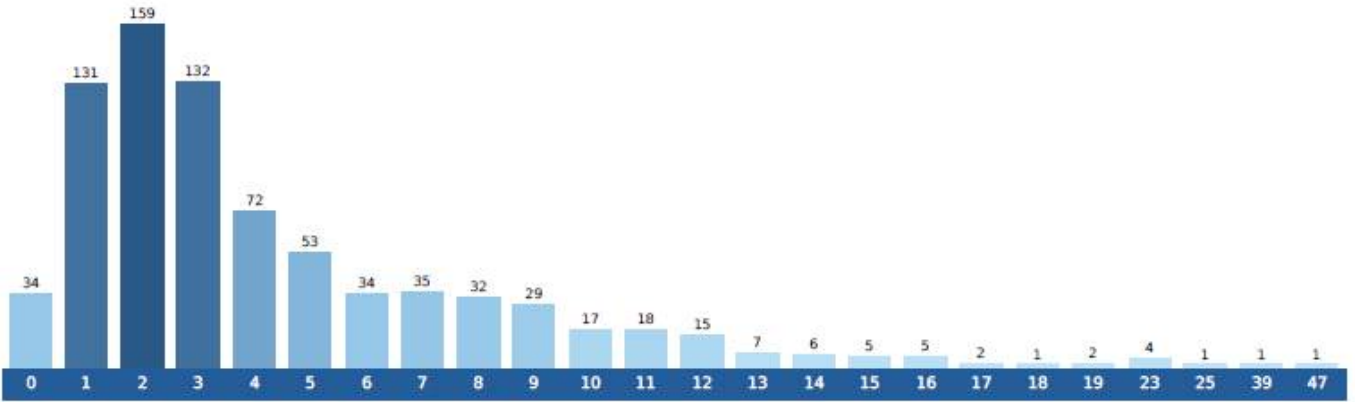


그림 9. 경기도 확진자 증상발현일부터 확진까지 소요일 분포(20.6.22.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감염경로별 유행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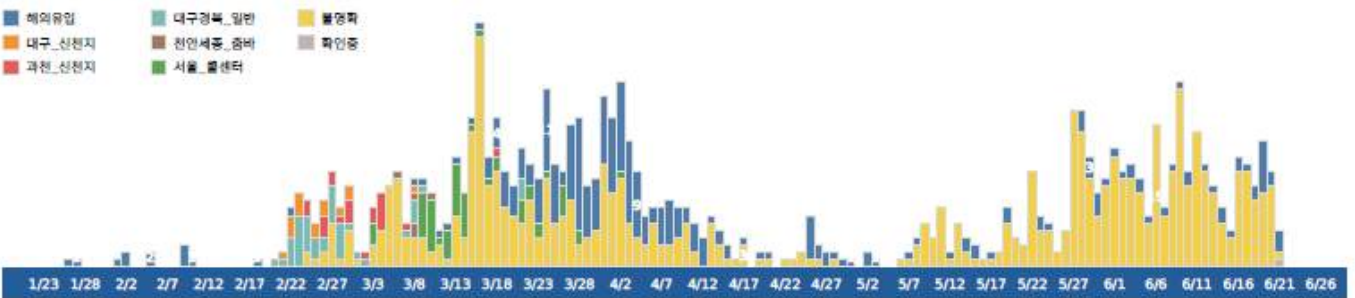


그림 10. 경기도 감염경로별 유행곡선\*(20.6.22.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추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 추가 확진자 세부현황(6.21.0시~6.22.0시)

연번	전국 번호	성별	출생 연도	발생경위	확진 일자	격리병원	지역
1120	확인중	여	'67	'20.6.7일 서울 구로구 온수교회 예배 참석, 확진자 접촉 추정, 6.18일 기침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	6.20.	보라매병원	부 천
1121	확인중	여	'66	12288번 환자의 접촉자 (서울 구로 대자연코리아)	6.21.	이천병원	군 포
1122	확인중	여	'97	'20.6.18일까지 해외방문(미국), 특별한 증상발현 없음, 의료기관 선별진료	6.21.	이천병원	화 성
1123	확인중	남	'54	'20.6.19일 발열, 기침 및 두통 등 증상발현, 의료기관 선별진료	6.21.	성남의료원	안 양
1124	확인중	남	'90	'20.6.20일까지 해외방문(러시아), 특별한 증상발현 없음, 보건소 선별진료	6.21.	파주병원	파 주
1125	확인중	남	'94	'20.6.20일까지 해외방문(러시아), 특별한 증상발현 없음, 보건소 선별진료	6.21.	파주병원	파 주

※ 추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내외 뉴스

### □ 국외

- 전세계 하루 확진자 18만명 '최다'...美, 1만 명대서 다시 3만 명으로
-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18만 명 집계, 브라질, 인도도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 갱신
- 트럼프 대통령, 검사 속도 늦추라는 발언 논란...오하이오주 2차 경제 봉쇄 고려나서
- 중남미 200만 명 확진 '대확산', 브라질 하루 5만 명 이상 확진...인도 국영병원 휴가 중단 명령

### □ 국내

- 파키스탄·방글라데시궤 확진자 이틀새 27명...정부, 입국 제한
-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도 지역 이동량은 늘어, 위증 환자도 네 배 이상 증가
- 대전 거쳐 충남-광주 번지는데...최초 감염경로는 아직 '깜깜'
- 대전시, 신천지 시설 22곳 강제 폐쇄, 전주 방문 숨긴 확진자는 고발 조치
- 임상 전문가들 '무증상 감염자, 파악된 환자의 10배 넘을 것'
- 입, 퇴원 기준 완화로 병상 미리 확보, 2차 대유행 대비 지적나서
- 곧 닥칠 수도권 병상부족...임상위 "기준 바꾸면 59% 확보 가능"
- 증상자 중심으로 한 명 한 명 쫓아가는 현 방역 수단은 확산 막지 못한다는 지적 나와
- 제2 정은경 나오기 힘들다...공직 꺼리는 의사들
- 민간의 3분의 1 밖에 안되는 보수... 전문가 뽑고도 정책에 반영 안돼 문제
- 공공병상수, 1천 명당 0.33개, 읍압병실도 서부권에는 4개뿐이라 더 늘려야



## “업무로 복귀하기”가 마주한 도전과제

Barnes M, Sax PE. Challenges of "Return to Work" in an Ongoing Pandemic. N.Engl J Med. 2020 Jun 18.

doi: [10.1056/NEJMSr2019953](https://doi.org/10.1056/NEJMSr2019953).

편집자 주 : 6월18일 NEJM에 Special reports로 실린 Return to work가 마주한 도전과제 논문을 두 번에 나누어 소개함. 미국 상황과 우리가 다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하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참고할 수 있음.

### \* 인력의 분리

시설 내 인구밀도가 낮아지면 전염 위험은 줄어든다. 고용주들은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원격 근무를 장려하는 등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교대근무를 하거나, 매우 이른 시간이나 매우 늦은 시간에 교대조를 편성하는 것이 그 예다. 이는 작업장 내 인구밀도를 낮춰줄 뿐 아니라 직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피하게 해준다. 인력을 여러 팀으로 나누어 팀별로 재택근무와 통근근무를 시키는 고용주들도 있다. 직장복귀 전략을 짤 때, 고용주는 현장 근무의 필요성과 위험 정도에 따라서 직원들을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 핵심 인력을 먼저 직장에 복귀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다른 직원들을 복귀시키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직장 복귀 의사를 물어볼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교대 시점, 교대에 걸리는 시간, 현장 근무의 필요성, 재택근무의 지속가능성, 위험 정도 등의 변수를 고려해 개별 직원을 대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교육기관과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도 학생 및 서비스 제공자가 현장에 복귀하는 시점과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COVID-19 팬데믹 이전에는 많은 근로자들은 사업적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 최근 몇 달 동안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원격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부 사업 분야의 경우 대면으로 진행되는 비즈니스 회의를 재개해야 할 수 있다. 혼잡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감염예방 조치를 통해 출장으로 발생할 위험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주는 현장 회의의 필요성, 목적지에서의 감염 위험, 개인의 건강 위험, 목적지의 예방정책(입국 후 의무 격리의 시행 등) 등과 같은 변수를 고려해 출장 재개를 결정해야 한다.

### \* 검사

고용주들은 직원들을 직장으로 복귀시키고 고객들과 방문객들을 맞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PCR 검사나 항원 검사를 활용해 직원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해 감염자와의 접촉 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방식은 직장 내 전염을 막는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심각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지침은 직장 내 직접적인 전염 위험을 막기 위해 검사를 강제하는 것이 연방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검사를 신뢰할 수 있으며 직원의 의료정보가 보호되는 한 말이다. EEOC는 또 항체 검사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장에 복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Covid-19 검사는 작업장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가장 적합한 조치로 보이기 쉽다. EEOC라는 공신력 있는 연방기관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포괄적인 검사를 통해 어떤 사람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SARS-CoV-2 검사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들은 이 전략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PCR 검사나 항원 검사는 검체를 채취할 수 있을 때에만 유효한 결과를 산출한다. 검사를 어떤 빈도로 실시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며, 이는 지역사회의 역학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뉴욕 주의 장기요양시설은 현재 근로자에게 2주마다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둘째, 고용주가 검사를 제공하거나 주선하더라도 검사의 결과는 검사를 받은 직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고용주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들의 검사를 의무화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적인 규제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동의가 없다면, 고용주는 자신의 검사 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셋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다고 반드시 감염성이 있어 직장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증상이 발현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감염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양성판정을 받더라도 10일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후속 검사 없이 격리해제 해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양성결과가 바이러스의 복제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권고사항이다.

넷째, 복귀를 위해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검사 방식과 검사 결과의 공유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다. 다섯째, 검체의 상태와 실험실의 역량에 따라 검사의 신뢰도가 달라지며, 항체검사는 개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CDC는 개별 직원들에 대한 작업 복귀를 결정할 때 항체 검사를 활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항체 검사는 광범위한 인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Antigen 검사의 경우 정확도는 항체 검사보다 낮지만 민감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검사 방식은 작업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다고 보기 힘들다. 검사 방식이 개선되고 지역사회 역학적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이러한 결론은 수정될 수 있다.

### \* 접촉자 추적과 모바일 어플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접촉자 추적’은 전통적인 공중보건 조치이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중국, 한국 등 여러 지역에서 접촉자 추적이 Covid-19의 전염을 막는데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팬데믹이 닥쳐왔을 때 충분한 검사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고 효과적인 접촉자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질병이 확산되어 있었다.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슈퍼전파자’ 한 명으로 인해 많은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접촉자를 식별해낼 수 있다면, 그가 감염성을 띠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팬데믹 초기에 미국이 충분한 검사 역량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접촉자 추적 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을 것이다.

근로자 중 확진자가 발생해도 고용주는 접촉자를 식별하기 위한 지원을 지역이나 주 보건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할 수 있다. 인력부족 때문이다. 이는 안타까운 일인데, 고용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접촉은 직장 내 접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적이나 집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은 식별되지 않는다. 어떤 고용자들은 직접 의사나 전문 인원을 고용해 직장 내 접촉자를 추적하기도 한다. Covid-19 진단을 받은 사람과 밀접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은 공중보건 지침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집에 남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검사 역량의 한계로 인해, 접촉자들을 모두 검사하는 것은 그동안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검사 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더 광범위하게 접촉자를 추적해 검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작업장 내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을 검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이 될 것이다.

PricewaterhouseCoopers, 애플, 구글 등은 모바일 어플을 활용해 자동으로 접촉자를 추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어떤 어플(유타 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성화 앱)은 특정한 지리적 범위를 대상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준다. 이 어플들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식별하는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알람이 전달되며, 자가격리나 검사가 권고된다. 고용주들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에서 전자식 접촉자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사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는 전략에도 한계가 있다. 이 알고리즘은 확진자가 스스로 확진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할 때에만 유의미하다. 또한, 단순 거리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분리벽 설치 등의 감염 예방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힘들다. 위험이 과대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이나 방문객들이 서로 다른 어플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보유한 채로 일할 수 없는 작업장도 많다. 예컨대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일을 하기 전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이동하곤 한다. 어플을 활용한 접촉자 추적은 일반적인 방법의 접촉자 추적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지도 못한다. 접촉자가 협력하는지에 따라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연방과 주의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감염 예방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에게 모바일 어플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전에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어플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특정 직원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하기 위한 조건으로 어플의 설치를 의무화 할 경우, 스마트폰이 없는 직원에게 전자기기를 제공해야 한다.

### \* 직장에서의 복귀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하기

이번 팬데믹은 현대 경제사에서 미국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다. 직장, 사업, 기관 모두가 전염성이 강한 병원균을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고용자와 기관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은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조치들이다. 개인보호장비의 적절한 착용에 대한 교육, 작업장의 인구밀도를 줄이고 병가를 유연하게 하는 행정적 조치, 분리벽이나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환경적 조치가 그것이다. PCR 검사, 항원 검사, Antigen 검사, 접촉자 추적 어플의 설치 등의 조치들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높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는 더 전통적인 공중보건 조치들을 강화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 참고자료

#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 활용 방법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http://www.gidcc.or.kr>) 홈페이지에 오시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현황(매일 업데이트)

- 전국 및 경기도의 최신 발생현황, 확진자 역학조사 요약, 검사현황, WHO상황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지침 및 참고자료 모음
  - 배포되는 대응지침과 관련지침, 참고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출처 | GIDCC

---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6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지자체용) (5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국가재정입원치료병상용) (5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참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지자체용) (5판) 주요 개정사항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선별진료소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 - 선별진료소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검사 안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의료기관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관리-병원급 의료기관 (질병관리본부)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관리-의원급 의료기관 (질병관리본부)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안내사항 (5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참고] 중국 의 국가 의사환자 분류시 참고 사항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참고] 신종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 환자에 대한 의료물 처리방안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자체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참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 일단위로 업데이트하는 국외와 국내 발생현황, 이슈와 참고자료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 COVID-19 Daily Reports

총3건    금일: 0건	검색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3호	2020-02-22   17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2호	2020-02-21   6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1호	2020-02-20   9

- 보고서 호수별 수록자료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VID-19: What is next for Public Health(Lancet, 20.02.12)</li> <li>Guidelines for the use of non-pharmaceutical measures to delay and mitigate the impact of 2019-nCov(ECDC TECHNICAL REPORT, 20.02.10)</li> </ul>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싱가포르 의사환자기준과 의원급 대응현황</li> </ul>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콩 COVID-19 대응현황(CHP Website , 20.02.20)</li> </ul>
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에서 발표된 COVID-19 논문(KMLA Consortia, 20.02.06.)</li> <li>COVID-19 관련 논문을 찾는 방법 (WHO COVID-19 Global Research Website, 20.02.23.)</li> </ul>
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 성명서(ksid Website, 20.02.22)</li> <li>대한의사협회 성명서(KMA, 20.02.19)</li> <li>대구 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성명서(humanmed.org, 20.02.23)</li> </ul>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행 제한 조치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하는 이유(워싱턴대 공중보건 대학원, 20.02.21)</li> </ul>
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인(Stigma)을 해결하기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WHO Situation Report 35, 20.02.24)</li> <li>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 보도자료(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20.02.12)</li> </ul>
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전국확산에 따른 효과적 대응체계필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국립 중앙의료원, 20.02.26)</li> <li>코로나19(COVID-19)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 : 사회적 낙인(오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 (국제적십자사, UNICEF,WHO 가이드라인)</li> </ul>
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완화 가이드라인과 Standstill 적용 사례</li> </ul>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격리 시점에 따른 효과 추정(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연구진행중)</li> </ul>
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대응에서 개인보호장비의 합리적 사용 임시 지침</li> <li>Rational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Interim guidance(WHO, 20.02.27)</li> </ul>
1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port of the WHO-China Joint Mission on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WHO,20.02.29.)</li> </ul>
1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확진자 역학 분석 결과 I (2020.01.26.-03.02., 93명)</li> <li>시민 행동에 대한 두 번째 제안(시민건강연구소, 20.03.02)</li> </ul>
1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확진자 역학 분석 결과 II (2020.01.26.-03.02., 93명)</li> <li>코로나19 국민위험인식조사(2차) -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보도자료, 20.03.04)</li> </ul>
1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방법 (미국질병관리본부, 20.03.01)</li> <li>미국 COVID-19 지역사회 전파 대비를 위한 의료기관 임시 지침(미국질병관리본부, 20.02.29)</li> </ul>
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확진자 역학 분석 결과(2020.01.26.-03.05., 113명)</li> </ul>
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속 위험 평가 (ECDC, 20.03.02)</li> </ul>
1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속 위험 평가 (ECDC, 20.03.02)</li> </ul>
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차원의 완화조치가 COVID-19의 전염과 확산에 미치는 영향(Lancet, 20.03.06)</li> </ul>
2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속 위험 평가(ECDC, 20.03.02)</li> </ul>



21호	· N95 마스크 공급을 효율화하기 위한 전략 (미국질병관리본부, 20.02.29)
22호	· 경기도 확진자 역학 분석 결과(2020.01.26.-3.10., 174명) · N95 마스크의 공급을 효율화하기 위한 전략: 위기시 조치 (US CDC, 20.02.29)
23호	· COVID-19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임시지침 (WHO, 20.03.07.)
24호	·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지침(WHO, 20.03.07.)
25호	· COVID-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social distancing measures) 관련 고려 사항 (ECDC, 20.03.11)
26호	· 미국의 보육원,유치원,초·중·고등학교 운영자들을 위한 가이드 : COVID-19에 대응하는 임시지침 (미국질병관리본부, 20.03.12.)
27호	· 학교 폐쇄 관련 고려사항 (미국질병관리본부, 20.03.12.)
28호	· 코로나19 대유행 선언에 따른 대정부 권고안 (20.03.15) · 코로나19 대유행 선언에 따른 대국민 권고안 (20.03.15) · WHO : COVID-19에 대한 오해와 진실
29호	·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과 성남 의료원 코로나19 입원 환자 경과 (안성병원 내과, 20.03.13.)
30호	· 경기도 사업 소개: 경기도 코로나19 대규모 선별검사센터
31호	· COVID-19 사망률 및 의료서비스 수요를 줄이기 위한 비약물적 조치들의 영향에 관하여 - 요약, 서론, 연구방법 (Imperial College London, 2020.03.16)
32호	· COVID-19 사망률 및 의료서비스 수요를 줄이기 위한 비약물적 조치들의 영향에 관하여 - 결과 (Imperial College London, 2020.03.16)
33호	· COVID-19 사망률 및 의료서비스 수요를 줄이기 위한 비약물적 조치들의 영향에 관하여 - 논의점 (Imperial College London, 2020.03.16) · 미국의 병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Ann Intern Med, 20.03.11)
34호	· 코로나19 유행 및 한국의 대응에 대한 PHM Korea의 성명서(PHM, 20.03.19)
35호	· 한국 코로나19 감염질환 유행 자료를 이용한 감염재생산수와 유행 규모 추정(S, Choi., M, Ki. 20.03.1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과 관리(교육동영상)
36호	· Rapid Risk Assessment :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increased transmission in the EU/EEA and the UK - seventh update (ECDC, 20.03.25.)
37호	· COVID-19 시기에 부족한 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에 관하여 (Fair Allocation of Scarce Medical Resources in the Time of Covid-19)
38호	· SARS-Cov-2의 광범위한 확산이 의료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준비해야 하는 비상계획을 위한 지침(ECDC, 2020.03.17.) (Guidance for health system contingency planning during widespread transmission of SARS-CoV-2 with high impact on healthcare services )
39호	· COVID-19의 지구적 영향과 완화 및 억제 전략(Imperial College, 20.03.26) ·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론(Lipstich, M, 20.03.25)
40호	· COVID-19 팬데믹 시기의 개인보호장비 공급에 관하여(JAMA, 20.03.28)

41호	· 감염병 비상사태에서의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은? : 싱가포르 PHPC 사례를 기반으로
42호	· 과충,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논의하는 온라인 토론회 개최: 코로나19가 가져올 과학기술·사회·경제적 변화를 조망한다 · 과학기술계,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는 정신건강 대책 권고안' 발표 "10가지 권고안 실천으로 마음건강을 돌보세요"
43호	· 각국의 COVID-19 대응에 관한 비교 연구(Oxford University, 20.03.31)
44호	· WH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 href="#">Situation Report - 73</a> · COVID-19에 대한 유럽 11개국의 비약물적 개입이 가져온 영향과 감염자 수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
45호	· COVID-19 대유행 : 역학적 관점에서 다시 제기된 의료용 마스크 논쟁에 관한 정리
46호	· COVID-19 유행 중 감염력의 시간 변동 (Temporal variation in transmission during the COVID-19 outbreak) · COVID-19 time-dependent reproduction rate 산출 홈페이지 소개
47호	· 세계 각국의 대응정책 소개(일본, 영국)
48호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도시 정책을 중심으로
49호	· 세계 각국의 대응정책 소개(스웨덴, 독일)
50호	· 세계 각국의 대응정책 소개(스페인, 이탈리아)
51호	· 세계 각국의 대응정책 소개(미국, 프랑스)
52호	· 정부개입의 단계적 완화와 관련한 고려사항(ECDC, 20.04.08)
53호	· 세계 각국의 대응정책 소개(스위스, 네덜란드)
54호	· 세계 각국의 대응정책 소개(캐나다, 인도네시아)
55호	· COVID-19 감시체계 전략
56호	· 지역사회에서의 마스크 사용: 마스크 사용으로 무증상 감염자와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환자로부터 COVID-19 전염을 막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ECDC)
57호	· COVID-19에 대응하여 마스크를 사용하는 법에 대한 조언(WHO, 20.04.06)
58호	· WHO : COVID-19에 대한 오해와 진실(2)
59호	· COVID-19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WHO, 20.04.14.)
60호	· Strengthening hospital capacity for the COVID-19 pandemic J-IDEA pandemic hospital planner(Imperial College London, 2020.04.17.)

- 
- 61호 · 코로나바이러스 봉쇄 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유럽의 계획(European Commission, 20.04.14)
- 
- 62호 · 미국을 다시 열기 위한 단계별 전략(백악관, 20.04.16)
- 
- 63호 · COVID-19 관련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공중보건에 대한 조언(미국 감염학회·HIV 의학회, 20.04.16)
- 
- 64호 · SARS-CoV-2의 바이러스 배출과 항체반응에 대한 전문가의 긴급 자문 (Th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Technology/Medicine, 20.04.08)
- 
- 65호 · ECDC 신속 위험 평가 9th 업데이트(ECDC, 20.04.23)
- 
- 66호 · 지속가능한 출구 전략: 불확실성의 관리, 피해의 최소화(Tony Blair Institute for Global Change, 20.04.19)
- 
- 67호 · ECDC 신속 위험 평가 9<sup>th</sup> 업데이트 II(20.04.23)
- 
- 68호 · ECDC 신속 위험 평가 9<sup>th</sup> 업데이트 III(20.04.23)
- 
- 69호 · COVID-19의 변화 국면에 따라 공중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조정하는 법(WHO, 20.04.24)
- 
- 70호 · COVID-19의 변화 국면에 따라 공중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조정하는 법 II(WHO, 20.04.24)
- 
- 71호 · 경기도 코로나19 역학적 특성 분석(20.1.26.-4.27)
- 
- 72호 · 경기도 코로나19 역학적 특성 분석 II(20.1.26.-4.27)
- 
- 73호 · 경기도 코로나19 역학적 특성 분석III(20.1.26.-4.27)
- 
- 74호 · COVID-19: The CIDRAP Viewpoint Part 1: The Future of the COVID-19 Pandemic: Lessons Learned from Pandemic Influenza(20.04.30.)
- 
- 75호 · 경기도 코로나19 역학적 특성 분석IV(20.1.26.-4.27)
- 
- 76호 · 경기도 코로나19 역학적 특성 분석 V(20.1.26.-4.27)
- 
- 77호 · 코로나19 관련 한국 논문출판 현황(20.1.1.-5.4.)
- 
- 78호 · COVID-19에 대한 접촉자 관리: 현재 근거, 확장 옵션 및 필요한 자원 평가(ECDC, 20.05.05)
- 
- 79호 · SARS-CoV-2 진단검사의 해석(JAMA. Published online, 20.05.06)
- 
- 80호 · 경기도 코로나19 역학적 특성 분석VI(20.1.26.-4.27.)
-

81호	· 미국감염학회 COVID-19 진단 가이드라인(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20.05.06)
82호	· COVID-19: The CIDRAP Viewpoint Part 2: Effective COVID-19 Crisis Communication(20.05.06.)
83호	· COVID-19 주요 연구 질문 및 권고 사항
84호	· 코로나19 시대, 공중보건과 사회적 조치의 조정 시 고려할 것들(WHO, 20.04.16.) · 경기도 코로나19 역학적 특성 분석Ⅶ(20.1.26.-4.27.)
85호	· 코로나19 시대, 공중보건과 사회적 조치의 조정 시 기준: 공중보건과 사회적 조치 조정 시 고려할 것들의 부록(WHO, 20.05.12.)
86호	· COVID-19 감시체계 전략 임시지침(WHO, 20.05.10.)
87호	· COVID-19와 접촉자 추적 I (WHO, 20.05.10.)
88호	· COVID-19와 접촉자 추적 II(WHO, 20.05.10.)
89호	· COVID-19와 관련된 Q&A(OIE, 20.05.14)
90호	· COVID-19시기의 학교 관련 공중보건 조치를 위한 고려사항(WHO, 20.05.10)
91호	· COVID-19시기에 환경표면을 세척하고 소독하는 방법(WHO, 20.05.15)
92호	· COVID-19시기에 환경표면을 세척하고 소독하는 방법 II(WHO, 20.05.15)
93호	· COVID-19 영향에 대한 이해: 주요 질문과 정보 격차(ACAPS Thematic Report, 20.05.18)
94호	· COVID-19dp 대한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의 개요(WHO, 20.05.18)
95호	· COVID-19 바이러스와 항체에 대한 현명한 검사 방안 Part 3: Smart Testing for COVID-19 Virus and Antibodies COVID-19: The CIDRAP Viewpoint(20.05.20.)
96호	· COVID-19 장기적 비약물 중재의 조정 : 원칙과 Tool Calibrating long-term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for COVID-19 : Principles and facilitation tools(WPRO, 20.05.15.)
97호	· 장기요양시설에서 COVID-19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략(ECDC, 20.05.19.) Approaches to monitoring COVID-19 in long-term care facilities
98호	· 장기요양시설에서 COVID-19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략 II(ECDC, 20.05.19.) Approaches to monitoring COVID-19 in long-term care facilities
99호	· COVID-19 장기적 비약물 중재의 조정 : 원칙과 Tool II Calibrating long-term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for COVID-19 : Principles and facilitation tools(WPRO, 20.05.15.)
100호	· 100호 발간에 부쳐(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이희영 단장)

101호	· 뉴질랜드의 COVID-19 대응에 관한 배경설명과 개괄(New Zealand COVID-19 Public Health Response Strategy Team, 20.03.30.)
102호	· 한국의 COVID-19 대응과 강력한 개입을 철회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Imperial College, 20.05.29.)
103호	· 한국의 COVID-19 대응과 강력한 개입을 철회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II(Imperial College, 20.05.29.)
104호	· Small droplet aerosols in poorly ventilated spaces and SARS-CoV-2 transmission? How can airborne transmission of COVID-19 indoors be minimised?
105호	· COVID-19 임상 진료 : 예비 가이드라인 Clinical management of COVID-19 interim guidance(WHO,20.05.27.)
106호	· 디지털 근접 추적 기술을 COVID-19 접촉자 추적에 활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윤리적 지침 WHO, 20.05.28.)
107호	· SARS-CoV-2 전염 줄이기
108호	· COVID-19의 접촉자 추적: 필요한 점과 더 세밀한 접근(CIDRAP,20.06.02)
109호	· COVID-19의 접촉자 추적: 필요한 점과 더 세밀한 접근 II (CIDRAP,20.06.02)
110호	· COVID-19와 마스크 사용에 관한 조언(WHO, 20.06.05.)
111호	· COVID-19와 마스크 사용에 관한 조언 II (WHO, 20.06.05.)
112호	· COVID-19와 마스크 사용에 관한 조언III(WHO, 20.06.05.)
113호	· SARS-CoV-2 감염의 위음성 검사: 도전과 시사점
114호	· 일차 의료시설에서의 COVID-19 감염예방과 통제: 의원, 치과, 약국을 포함하여 (ECDC, 20.06.09.)
115호	· 일차 의료시설에서의 COVID-19 감염예방과 통제: 의원, 치과, 약국을 포함하여 II (ECDC, 20.06.09.)
116호	· EU/EEA, UK 코로나19 신속위험평가 10번째 업데이트 (ECDC, 20.06.11.)
117호	· EU/EEA, UK 코로나19 신속위험평가 10번째 업데이트 II (ECDC, 20.06.11.)
118호	· COVID-19 관련 공중보건 대응의 중도 및 사후 검토(ECDC, 20.06.04.)
119호	· COVID-19 관련 공중보건 대응의 중도 및 사후 검토 II (ECDC, 20.06.04.)
120호	· WHO 카드뉴스
121호	· COVID-19 환자를 격리해제 시키는 기준(WHO, 20.06.17.)
122호	· COVID-19 대응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ECDC, 20.06.17)



---

123호 · “업무로 복귀하기”가 마주한 도전과제 I (20.06.18)

---

124호 · “업무로 복귀하기”가 마주한 도전과제 II (20.06.18)

---